산업통상자원부	보 도 자 료	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	
보도 일시	2022. 11. 21.(월) 16:30 < 11.22.(화) 조간 >	배포 일시	2022. 11. 21.(월)
담당 부서 <총괄>	통상정책국 디지털경제통상과	책임자	과 장 이창훈 (044-203-5630)
		담당자	사무관 이채원 (044-203-5631)
			사무관 임수지 (044-203-5635)

「한-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」 정식 서명으로 아세안의 디지털 허브, 싱가포르와의 디지털 동맹 구축

- 우리나라 최초의 디지털통상협정인 한-싱 DPA 서명 -

- 한-아세안 정상회담 후속으로 아세안과의 디지털 협력 강화의 구체적 성과 -

□ **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**은 '22.11.21(月) 탄시렝(Tan See Leng)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제2장관과 **"한-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"**(Korea-Singapore Digital Partnership Agreement, 이하 '한-싱 DPA')에 서명하였다.

○ 양측은 지난해 12월 한-싱 DPA 타결 선언 이후, 협정문 법률 검토 및 국내 심의절차를 진행하였으며, **오늘 서명을 마지막으로 양국 간 협상 절차를 완료하였다.**

< 한-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(KSDPA) 서명식 개요 >

- (일시/장소) '22.11.21(월) 14:30 (현지시각) / 싱가포르 통상산업부
- (참석자) 우리측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, 싱측 탄시렝 통상산업부 제2장관 등
- (내용) 양측 인사말씀, 협정문 서명, 디지털경제대화 MOU 서명, 기념사진 촬영 등

□ **한-싱 DPA 서명**은 금번 **아세안 정상회담의 주요 성과**로서, **아세안 디지털 허브국가**인 **싱가포르를 시작**으로 '역내 경제통상 질서를 선도하고 **디지털 경제 협력을 확대**'하고자 하는 **'한-아세안 통상협력 전략'의 구체적 실천 사례**이다.

□ 안 본부장은 서명식에서 "**글로벌 통상의 중심축**이 기존의 상품·서비스 개방 논의에서 디지털경제, 공급망, 탄소중립 등 **산업 전반의 경쟁력**과 직결되는 **다양한 이슈에서와 연대와 협력**으로 이동하고 있으며"

○ "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체결한 **한-싱 FTA**가 한국의 **광범위한 FTA 네트워크 구축의 기반**이 되었듯, **한-싱 DPA**가 앞으로 한국이 확장해 나갈 **디지털 통상 네트워크의 모델이자 디딤돌** 역할을 할 것"이라고 평가하며,

○ "한-싱 DPA를 기초로 **DEPA 네트워크 확장, IPEF 디지털 협상** 등 **아태지역 디지털통상 질서 확립 논의**에 있어 **양국 간 긴밀한 공조**가 이루어지기를 기대"한다고 언급하였다.

[한-싱 DPA 의의]

1 디지털 방식을 통한 우리 중소·창업기업의 아세안 진출 기회 확대

□ 싱가포르는 **우리나라의 11위 교역 상대국**이자 **아세안**에서 가장 앞서 있는 **디지털 허브 국가**로. 싱가포르를 교두보로 **우리 기업의 아세안 시장 진출이 더욱 탄력**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.

□ 쇼피(Shopee), 라자다(Lazada) 등 **아세안 전역의 네트워크**를 보유한 **싱가포르 전자상거래 플랫폼**은 한류 콘텐츠를 좋아하고 인터넷 쇼핑에 익숙한 젊은 **아세안 소비자들을 우리 기업과 연결하는 가교** 역할을 하고 있으며,

○ DPA는 **무역과정 전자화, 통관절차 간소화**로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중소·창업 기업의 무역참여를 더욱 손쉽게하여,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**우리 소비재**(화장품, 의류, 식품 등)**의 아세안 수출에 긍정적 효과**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.

○ 또한, DPA는 컨텐츠를 포함한 **디지털 전송에 대한 영구적 무관세**와 **디지털 제품에 대한 비차별 대우**를 약속함으로써, 한-싱 양국간 디지털 컨텐츠 비즈니스의 안정적 환경을 마련하였다.

2 데이터를 활용한 글로벌 제조혁신 기반 구축

□ 싱가포르는 **자유롭고 개방적인 기업환경**을 토대로 한 **글로벌 기업의 아세안 진출 거점**으로, 최근에는 **혁신 기술과 스타트업의 테스트베드로 각광**받고 있다.

□ **탄탄한 제조 경쟁력을 갖춘 우리 기업**도 **싱가포르를 거점**으로 **기술혁신**과 **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선진화**를 추진 중이며,

○ DPA는 양국 간 **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협력을 촉진**할 것으로 기대된다.

3 아태지역 및 글로벌 디지털통상 규범 정립에 주도적 역할

□ **싱가포르**는 높은 디지털 경쟁력을 바탕으로 **디지털 통상협정 체결을 통한 글로벌 규범형성 논의를 선도**하고 있다.

* 싱가포르는 싱·뉴·칠 DEPA('20.6월), 싱-호 DEA('20.8월), 영-싱 DEA('21.12월)을 체결하였으며, 호주, 일본과 WTO 전자상거래 협상 공동의장국으로 활동중

□ **우리 최초의 디지털 협정**인 한-싱 DPA를 발판으로, DEPA 네트워크 확대, IPEF 디지털 분야 협상 등 아태지역 디지털 통상 질서 확립 논의에서 **양국 간 공조와 협력**을 더욱 긴밀히 할 예정이다.

[관련 MOU 체결]

□ 한편, 양국 통상장관은 협정문 서명에 이어 「**한-싱가포르 디지털경제 대화 MOU**」**에 서명**하였으며, **내년 초 제1차 디지털경제대화를 개최할 계획**이다.

○ 동 대화는 정부기관 뿐만 아니라 기업, 학계, 연구기관 등 **민간 부문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**하여 양국이 상호 win-win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협력 프로젝트를 **발굴, 지원하기 위한 협력 창구**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.

□ 이와 더불어, 한-싱 DPA에 포함된 협력 조항을 바탕으로 양국 정부기관 간 호혜적·**실질적 협력사업 추진** 논의가 진행중으로,

○ **전자적으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** 등 **전자통관 서류를 인정·검증**하기 위한 **데이터 교환 협력**(관세청), **인공지능**(AI) **분야 윤리·거버넌스 체제 공동연구 등 협력**(과기정통부)을 위한 **기관 간 약정**(MOU)이 조만간 체결될 예정이다.

※ 기관 간 약정 주요내용

- (전자적 통관 데이터 교환 협력 MOU) 원산지증명서 등 FTA 통관 문서의 전자적 교환 및 검증 절차 운영 (韓관세청 – 싱가포르 세관)
- (AI 협력 MOU) AI 윤리·거버넌스 체제, AI 스타트업, AI 인재 등 관련 분야에 대한 △정보교환, △공동연구, △인적 교류 등 협력 추진 (韓과학기술정보통신부 – 싱 정보통신부(MCI))

[향후 계획]

□ 정부는 **내년 초 한-싱 DPA 발효를 목표**로 싱가포르측과 필요한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.

□ 한편, **한-싱 DPA 협정문과 상세설명자료**는 **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**(www.fta.go.kr)에서 '22.11.21(월) 17시 이후 확인할 수 있다.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참고 **한-싱 DPA 주요 내용**

□ 한-싱 DPA는 **전자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국가간 교역에 대한 무역 규범과 디지털 신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조항**을 균형있게 반영

○ 4개 조항에 불과하였던 기존 한-싱 FTA 전자상거래 챕터 대비 **규범 범위를 대폭 확대**하고, **AI, 핀테크, 디지털경제의 표준 협력** 등 양국이 **관심있는 협력 분야를 포함**

* 기존 한-싱가포르 FTA('06년 발효) 전자상거래 챕터는 ˙정의, ˙적용범위, ˙서비스의 전자적 공급, ˙디지털 제품 등 4개 조항으로 간략하게 구성

<참고> 한-싱가포르 DPA 분야별 주요 조항

분야	주요 조항
전자상거래 원활화	전자적전송 무관세, 전자인증·전자서명, 전자송장, 전자지급, 종이서류 없는 무역, 특송화물 등
디지털 비즈니스활성화	디지털제품 비차별대우, 국경간 정보이전 원활화, 컴퓨터설비 현지화 요구금지, 소스코드 공개 요구금지, 인공지능(AI)·핀테크·디지털경제 표준 협력 등
온라인 소비자보호	개인정보 보호, 온라인소비자 보호, 스팸 메시지 규제, 사이버보안 등

(전자상거래 원활화)

○ ▵**전자화된 무역문서**의 활용을 촉진하고, ▵**신속한 통관절차**를 보장하며, ▵**전자결제**, ▵**전자인증·서명**, ▵**전자송장** 등 **국경 간 무역 과정 전반을 전자화**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 사항들을 규정한다.

○ 또한, ▵**콘텐츠를 포함한 전자적 전송에 대해 무관세**를 유지하고, ▵상대국의 **디지털제품**에 대해 자국의 제품과 불리하게 대우할 수 없도록 하여, **전자적 형식의 제품 및 콘텐츠의 자유로운 교역**을 가능하도록 한다.

(디지털 비즈니스 활성화)

○ ▵**개인정보를 포함**하여 **국경 간 자유로운 데이터 이전**을 보장하고, ▵상대국 영역에서의 사업수행을 조건으로 **컴퓨터 설비를**

자국내 두도록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여 자유로운 디지털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한다.

- 다만, **정당한 공공정책 목적달성**을 위한 정부의 조치는 예외적으로 인정한다.

○ 또한, ▵**소프트웨어의 핵심요소**인 **소스코드나 알고리즘**에 대해 이전·공개하도록 하거나, ▵**ICT 제품에 대해 특정 암호기법**을 사용하도록 요구할 수 없도록 하여 **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**하고, **새로운 무역기술장벽**이 도입되는 것을 방지한다.

○ 그 외 **디지털 분야 협력**으로 ▵**AI 윤리적 거버넌스 체계 개발,** ▵양국 **핀테크 기업 간 네트워크 확대**, ▵**디지털경제 분야 표준 개발**에 대한 **기술협력 및 공동연구** 등 협력을 증진하기로 하였다.

(온라인 소비자 보호)

○ 기업과 소비자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다지털 교역환경 조성을 위해, ▵**온라인 소비자 보호,** ▵**스팸메시지 규제,** ▵**개인정보 보호** 등에 대한 **국내법 체계를 도입, 유지**하고, **국경간 발생하는 소비자 이익 침해**를 구제하는 데 **협력**하도록 한다.

○ 나아가, ▵**소비자의 인터넷 접근 권한을 보장**하고, ▵**사이버보안** 분야 자격 상호인정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.

(협정문 적용 범위)

○ 동 협정은 **전자적 수단에 의한 무역**에 영향을 미치거나, **전자적 수단으로 무역을 원활하게 하는** 당사국의 조치에 적용된다.

- 다만, **정부조달** 관련 사항과 **정부가 보유 또는 처리하는 정보**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.

○ 또한, **전자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서비스의 공급**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대해서는, 한-싱가포르 FTA 서비스(제9장)·투자(제10장)·금융서비스(제12장)의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.